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감원 분쟁위, 암 유사질병도 암 보험금 지급 결정

□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희귀병인 ‘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*(D76.1)’이 암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암 보험금을 지급할 것으로 결정함.

-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(D76.1)은 비록 병리조직학적 소견상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, 임상학적 소견상으로는 질병자체가 혈액에 발생하는 악성종양과 유사함.
- 또한 항암제 및 면역억제제 치료 등 항암치료를 받아야하며, 치료과정이 어렵고 예후도 아주 불량한 악성종양 수준인 점 등을 감안하여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림.

* 외부세포나 감염세포를 잡아먹는 백혈구(대식세포)가 기준치보다 많이 생성이 되어 자신의 혈액세포를 파괴하는 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희귀병임.

□ 이번 결정은 그간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의 악성신생물 인정 여부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사건 및 회사의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.

- 8개의 생·손보사는 환자의 임상적 증상 및 치료방법, 예후 등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 등을 감안하여 48건의 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음.
- 반면, 기지급한 바 있는 8개사를 포함한 19개사는 질병분류코드가 D76.1로 분류되어 해당 보험약관의 ‘악성신생물분류표’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.

□ 조정위원회는 본 건의 쟁점에 대해 보험약관이 정하고 있는 ‘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’의 규정취지를 전제로 하되, 임상학적으로 항암치료 여부, 질환 예후 및 후유증, 임상적 증상 등에 있어 악성신생물로 볼 수 있는 의적소견이 있어야 한다고 전함.

- 이번 분쟁조정 결과로 암 보험가입자는 암이 아니더라도 암과 같은 징후를 보이고 동일한 치료법이 적용된다면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됨.

(‘금융분쟁조정위원회’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에 대한 임상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암 관련 보험금 지급을 결정,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분쟁조정총괄팀, 10/6)